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유호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6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유호렬, 강희향,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허정행

1. 제안이유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구기 및 상징물의 관리 등(안 제3조 ~ 제5조)
-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책무
(안 제6조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안 제11조 ~ 제14조)
-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안 제15조 ~ 제16조)

3. 관계법령 : 없음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7. 9. 15 ~ 9.19 (의견제출 없음)

나.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상징물과 구기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꽃 : 목련
4. 나무 : 단풍나무
5. 새 : 청둥오리
6. 색 : 초록색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 또는 은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보·디자인·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구 상징물인 휘장과 브랜드 슬로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

1. 기본도안



2. 의미

- (1) 마포가 지닌 문화, 창의, 예술, 미디어, 첨단산업 등 다양한 특징들을 영문 워드마크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를 하나의 선이 연결된 모습으로 디자인
- (2) 마포의 다채로움이 공존하고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함

3. 색상



[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브랜드 슬로건

1. 브랜드 슬로건

my Mapo

2. 의미

- (1) 문화, 예술, 산업, 미디어 등 각 분야에 다양한 멋이 공존하는 마포에서 누구나 나만의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의미
- (2) '마이 마포'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운율과 리듬감을 살리고 어절 사이에 다양한 단어조합으로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디자인

3. 색상

MAPO
Sky Blue

CMYK : C100 M0 Y0 K0
PANTONE Process Cyan C

〈슬로건 단독 사용시〉

MAPO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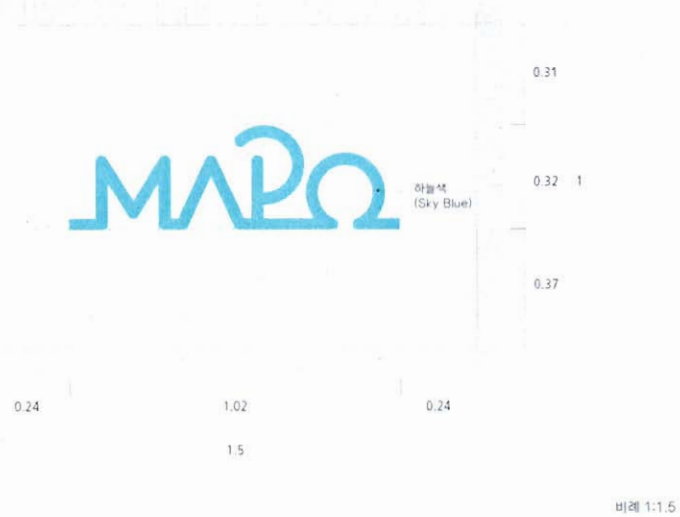
CMYK : C100 M70 Y0 K0
PANTONE 293 C

〈휘장과 결합하여 사용시〉

[별표 3]

서울특별시 마포구기의 모형

1. 정기 (실내계양)



2. 약기 (실외계양)



[별지서식]

상징물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제16조와 관련)		
신 청 인	단체(회사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